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4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송석준 · 김대식
이수진 · 서미화 · 최수진
주호영 · 정성국 · 안철수
박덕흠 · 고동진 · 김소희
신성범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,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. 또한 입양인, 친생부모,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,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.

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,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

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입양의 원칙으로서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1항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(안 제6조제7항 신설).
- 다. 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기본계획에 입양정보의 관리·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신설).
- 라.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양자가 된 사람, 친생부모 및 양부모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(안 제12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,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·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(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- 바.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결연에 관한 입양정

책위원회 심의·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 및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(안 제20조제2항 신설).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공하기 위하여”를 “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외입양을”을 “국외입양 및 시설보호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강구하여야 한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”를 “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입양정보의 관리·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

제12조제4항 중 “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”을 “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, 입양 관계인(양자가 된 사람, 친생부모 및 양부모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-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유형별 입양 관계인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입양의 신청 등)”을 “(입양의 신청 및 자격 심의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,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심의·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(재심의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”로, “발급하여야 한다”를 “발급하고,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
· 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과(재심의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
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발급 절차,
정보 제공의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제13조제4항”을 “제6조제6항, 제13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입양의 원칙) ① (생략)	제3조(입양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.</u>
<u>② (생략)</u>	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제6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<u>제공하기 위하여</u>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	제6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<u>국외입양을</u>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<u>국외입양 및 시설보호를</u> ----- -----.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	⑥ -----

사자 상호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0조(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6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제12조(입양정책위원회) ① ~ ③

-----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

3년마다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입양정보의 관리·공개 방법의 평가 및 개선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입양정책위원회) ① ~ ③

(생 략)

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, 의료·법률 전문가,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,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· ⑥ (생 략)

<신 설>

⑦ (생 략)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입양의 신청 등) ① ~ ③

(생 략)

<신 설>
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,
입양 관계인(양자가 된 사람,
친생부모 및 양부모를 말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

-----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유형별 입양 관계인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⑨ -----제8항-----

-----.

제19조(입양의 신청 및 자격 심

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

<u><신 설></u> 제20조(결연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 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, 생년월 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	<u>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 정하고,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에게 심의·의결의 주요 내용 과 결과(재심의하기로 한 경우 를 포함한다) 및 제18조에 따 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.</u>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 제20조(결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의 주요 내용과 결 과(재심의하기로 한 경우를 포 함한다) 및 결연 여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③ ----- --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-- ----- ----- ----- ----- 발급하고, 양자가 될 아동에 관 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
---	--

<u><신 설></u> 제37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제13조제4항</u>, 제19조제1항·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,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· ③ (생략)	<u>야 한다.</u> <u>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발급 절차, 정보 제공의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37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-----<u>제6조제6항, 제13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